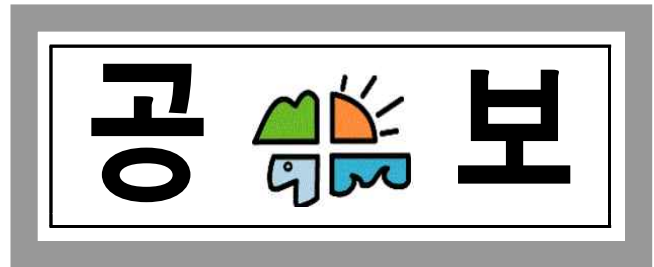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54호 2023년 3월 24일(금)

입법예고

-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조문 반영하여 책임관 변경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변경(제13조 1항)

-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061, 팩스 033-639-2059, 전자문서 hb95101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033-639-2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제1항 중 “소관 과장” 을 “소관 국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 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u>소관 과장</u>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 ----- ----- ----- <u>소관 국장</u>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여성친화도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근거 마련 필요
- 나. 규칙의 일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됨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상위조례로 편입 및 규칙 폐지

3.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관련 내용 개정(안 제18조)
- 나. 위원장의 임무, 임기, 해촉, 회의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9~23조)
- 다. 제28조(행정 및 재정지원)의 ②항 신설

-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육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443, 팩스 033-639-2059, 전자문서 sh76120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033-639-2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시민”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기반시설 :”을 “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이용시설 :”을 “공공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 :”을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설치)”를 “(기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중전의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23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u>시장은</u>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u>시민</u> ,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u>속초시장(이하 “시장”</u> 이라 한다)-----	

			-----	<u>속초시민(이하 “시민”</u> 이라 한다)-----

			-----	.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	

			-----	.
1.	<u>도시기반시설</u> :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1.	<u>도시기반시설</u>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u>공공이용시설</u>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2.	<u>공공이용시설</u>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주거단지 <u>등</u>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3.	----- <u>등</u>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협약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정업무 중 기획·여성·복지·도시공간·안전·일자리경제정책·보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제17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

③ -----

----- 부
서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약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약체를 대표하고, 협약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약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신 설>

장이 정한다.

제20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위원에 제척·기피·회피
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
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
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3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

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24조 ~ 제27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신 설>

제19조 ~ 제22조 (생략)

제23조(행정 및 재정지원) (생략)

<신 설>

제6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삭 제>

<삭 제>